

의안번호	2218082
의 퇴 인	박정의원
회 답 일	2026.4.27.
추계번호	26B2010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3(위해방지 등) 신설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·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·예방·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음 1.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·조사 2.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통계 작성·관리 3.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해 예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2	안 제46조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(이하 “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9.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등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36조의3(위해방지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6조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)		

2. 상세 사유

□ 위해방지 사업 수행 (안 제36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·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·예방·대응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피해사례 정보를 안정적·신속·정확하게 수집·분석·활용함으로써 감시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「생활화학제품·살생물제 피해사례 정보 수집·분석 연구」 용역을 수행 중이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1억 2,930만원임

[표 1] 연구용역 관련 주요내용

(단위: 백만원)

용역명	수행기관	수행기간	계약금액	주요내용
생활화학제품· 살생물제 피해사례 정보 수집·분석 연구	(주)안전성 코어랩	2026.4~ 2027.2	129	·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피해정보 수집처 현황 분석 및 발굴 ·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피해정보 수집 ·수집된 피해정보의 분석 및 활용 ·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계획 마련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·재산 또는 환경상 위해의 감시·예방·대응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, 기존 연구용역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행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

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(안 제46조)

- 개정안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 제46조¹⁾에 따라 ‘한국환경산업기술원’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로 지정되어 유통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, 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은 2026년 기준 88억 4,400만원임 (참고자료 참조)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경우,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행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는 한계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제46조(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(이하 “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2.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
3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
4.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
5.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
6.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
7.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

8.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사업 운영 현황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- (생활화학제품 제도개선)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한 안전·표시기준(안) 마련('19~, '26년 1,681백만원)
- (화학제품안전법 이행지원) 신고기업의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·소비자 홍보,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(화우품) 및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운영('19~, '26년 1,603백만원)
- (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) 유통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조사, 시장감시 활동, 포상금 운영 등을 통해 안전·표시기준 위반제품의 시장 퇴출 및 국민안전도모('19~, '26년 3,812백만원)
- (화학제품관리시스템 운영)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관련 정보망 운영 및 안생품 신고증명서 발급('19~, '26년 1,498백만원)

(단위: 백만원, %)

구 분		2024 예산	2025 예산(A)	2026 예산(B)	증 감	
					(B-A)	(C/A) %
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		9,820	9,642	8,844	△798	8.2
기관운영	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(출연)	250	250	250	—	—
정부위탁· 대행	유통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	2,095	3,812	3,812	—	—
	화학제품안전법 제도이행 지원	1,453	1,453	1,603	150	10.3
	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선	1,681	1,681	1,681	—	—
	화학제품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	4,341	2,446	1,498	△948	38.7